



별첨 4

관련 규정

1. 보험업법
2. 보험업법 시행령
3. 보험업감독규정
4.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2)
5. 업무보고서 양식

1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③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당해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당해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지급여력금액)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내지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 가. 자본금(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제외)
 - 나. 자본잉여금
 - 다. 이익잉여금
 - 라. 자본조정
 -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바.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사. 대손충당금.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아.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과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동 합산액은 자기자본('바'목의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차.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카.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파. 비상위험준비금

하.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및 재평가잉여금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자산(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

마.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보험업 법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발행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회사 자본과부족

다만,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자본과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평가 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을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부족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을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p>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p> <p>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의 책임준비금은 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에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의 산출방식은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 2.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 <p>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료기준 산출금액과 보험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보험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보험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p>제7-2조 (지급여력기준금액)</p> <p>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액 산출대상 :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 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의 제공,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공, 시장위험액의 제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공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p>②제1항제1호의 보험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보험가격위험액의 제공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의 제공을 합산한 금액의 제공근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보험료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7-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p>이 경우 보험료기준비율 및 보험금기준 비율은 각 목과 같다. 다만,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보험료가 수입보험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보험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 및 수재기준 발생손해액의 50% 미만일 때에는 평균 원수 및 수재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p> <p>가. 보험료기준비율 : 17.8% 나. 보험금기준비율 : 25.2%</p> <p>2. 장기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의 4%로 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산정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해약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p> <p>3.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보유위험보험료와 발생손해액(순보험금 + 지급준비금 증가액)을 이용하여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p>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p>③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 설〉	<p>④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p>
〈신 설〉	<p>⑤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일반시장위험액과 제2호에 의한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변액연금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 중 일정 연령이후까지 생존시 제지급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의 계약자적립금과 위험 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신 설〉	<p>⑥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p>
〈신 설〉	<p>⑦제2항 내지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 2009년 4월 1일 이후 2년간은 제7-2조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별표 12)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 산출방식 (제7-2조제1항관련, 개정前)

1. 위험보험금(재보험 출재전 및 수재후)

일반상품	금리연동형상품
보험가입금액(①) - 책임준비금	일반사망보험금액(②) (책임준비금 미포함)

2. 보험위험계수

$$\text{위험보험료/보험가입금액(①+②)} \times \sum_{\text{위험}} \{ (\text{위험별})\text{보험금지급률} \times (\text{위험별})\text{보험금점유율} \times (\text{위험별})\text{자기부담률} \}$$

- 주) 가. 위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해, 질병/입원으로 구분하며, 보험금지급률과 보험금점유율 및 자기부담률은 위험별로 산출하여 적용
- 나. 위험보험료 : 직전 1년간 수입된 위험보험료(재보험 출재전 및 수재후 위험보험료 포함)
- 다. 지급보험금 : 직전 1년간 발생된 위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수입재보험금 미차감, 지급재보험금 포함, 소멸계약의 책임준비금 미차감)
- 라.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 마. 보험금점유율은 지급보험금중 각 위험이 차지하는 지급보험금의 점유비임
- 바. 자기부담률 : (지급보험금 -수입재보험금) / 지급보험금.
다만, 자기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50%로 한다.

4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2)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5-7조의3(지급여력기준금액) 감독규정 제7-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3 관련)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2조에서 정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text{지급여력기준금액} = \sqrt{\text{보험위험액}^2 + (\text{금리위험액} + \text{신용위험액})^2 + \text{시장위험액}^2 + \text{운영위험액}^2}$$

나.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산출시 “익스포저”라 함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각 위험에 대한 노출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보험위험액

2-1. (보험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보험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액을 각각 구한 후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text{보험위험액} = \sqrt{\text{보험가격위험액}^2 + \text{준비금위험액}^2}$$

나.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 준비금위험액은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2. (보험상품의 구분)

가. 보험위험액 산출을 위한 보험상품 구분 기준은 <표1>과 같다.

나. <표1>에서 구분한 보험상품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판매 후 최초 보험위험액 산출시점까지의 원수위험보험료 구성비가 가장 큰 보험상품으로 분류한다.

-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정하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하 “재보험전업사”라 한다)는 수재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되, 연동수수료적용 비례재보험, 연동수수료비적용 비례재보험 및 비비례재보험으로 세부 구분한다.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제3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이하 “제3보험전업사”라 한다)의 보험상품은 <표1>의 생명보험 질병보험으로 분류한다.

2-3.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 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위험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보험가격위험액} = \left\{ \sum_{\text{보험상품구분}} (\text{보유위험보험료} \times \text{조정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 (1)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위험보험료는 원수위험보험료에 수재위험보험료를 가산하고 출재위험보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의 실적으로 한다. 단, 보유위험보험료가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 (2) 보험상품 구분별 조정위험계수는 <표2>의 보험상품별 위험계수에 갱신조정률을 곱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위험계수} \\ &= \{ \text{갱신형특약 이외의 보유위험보험료} \times \langle \text{표2} \rangle \text{의 } \textcircled{A} \\ &+ \text{갱신형특약(갱신주기 3년 이하) 보유위험보험료} \times \langle \text{표2} \rangle \text{의 } \textcircled{A} \times \langle \text{표2} \rangle \text{의 } \textcircled{B} \\ &+ \text{갱신형특약(갱신주기 3년초과 5년이하) 보유위험보험료} \times \langle \text{표2} \rangle \text{의 } \textcircled{A} \times \langle \text{표2} \rangle \text{의 } \textcircled{C} \} \\ &\div \text{보유위험보험료} \end{aligned}$$

- (3) (2)의 갱신형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보험회사가 예정위험률을 변경할 수 있는 특약을 말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등에 따라 자동으로 예정위험률이 변경되거나 갱신주기가 5년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는 갱신형특약으로 보지 않는다.
- (4) 보유율은 보유위험보험료를 원수위험보험료와 수재위험보험료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재보험전업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위험보험료에 <표4>에서 정한 보험가격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보험가격위험액} = \left\{ \sum_{\substack{\text{보험상품} \\ \text{세부구분}}} (\text{보유위험보험료} \times \text{보험가격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2-4.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은 <표3>의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보험가격위험액} = \left\{ \sum_{\text{보험상품구분}} (\text{보유보험료} \times \text{조정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 (1)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에 수재보험료를 가산하고 해약환급금을 차감)에서 지급보험료(출재보험료에 해약환급금환입을 차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의 실적을 이용한다. 단, 보유보험료가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 (2) 보험상품 구분별 조정위험계수는 <표3>의 보험가격위험계수 및 기준합산비율과 회사별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위험계수} &= \{[(1 + \text{보험가격위험계수}) + (1 + \text{보험가격위험계수}) \times \text{조정률}] \div 2\} - 1 \\ \text{조정률} &= \text{회사별합산비율} \div \text{기준합산비율} \\ \text{회사별합산비율} &= \text{산출시점이 속한 회계년도 이전 5개 회계년도별 합산비율의 산술평균} \\ \text{연도별 합산비율} &= (\text{발생손해액} + \text{순사업비}) \div \text{경과보험료} \end{aligned}$$

- (3) (2)에서 산출한 조정위험계수가 <표3>의 위험계수상한을 초과하거나 위험계수하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상한 및 위험계수하한을 각각 적용한다.
- (4) 보험상품 구분별로 영업을 개시한지 5년이 초과되지 않아 회사별합산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및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하 “보증보험전업사”라 한다)는 (2)의 조정률을 1로 한다.
- (5) 보유율은 보유보험료를 수입보험료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재보험전업사의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은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보험료에 <표4>의 보험가격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보험가격위험액} = \left\{ \sum_{\text{보험상품 세부구분}} (\text{보유보험료} \times \text{보험가격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2-5. (일반손해보험의 준비금위험액)

가. 일반손해보험의 준비금위험액은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표5>의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준비금위험액} = \left\{ \sum_{\text{보험상품구분}} (\text{보유지급준비금} \times \text{준비금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 (1)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은 원수지급준비금에 수재지급준비금을 가산하고 출재지급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이용한다. 단, 보유지급준비금이 영(0)보다 작을 경우 영(0)으로 한다.
- (2) 보유율은 보유지급준비금을 원수지급준비금과 수재지급준비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재보험전업사의 일반손해보험 준비금위험액은 보험상품 구분별 보유지급준비금에 <표6>의 준비금위험계수를 곱하여 합산하되, 보유율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준비금위험액} = \left\{ \sum_{\text{보험상품 세부구분}} (\text{보유지급준비금} \times \text{준비금위험계수}) \right\} \times \max\left(1, \frac{50\%}{\text{보유율}}\right)$$

제 3 장 금리위험액

3-1. (금리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금리위험액은 생명보험회사의 일반계정,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금리위험액} = |\text{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text{보험부채 금리민감액}| \times \text{금리변동계수}$$

$$\text{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sum_{\text{금리부자산}} (\text{금리부자산 익스포져} \times \text{금리민감도})$$

$$\text{보험부채 금리민감액} = \sum_{\text{보험부채}} (\text{보험부채 익스포져} \times \text{금리민감도})$$

나. “금리부자산”이라 함은 이자를 수취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리부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단기매매증권
- (2) 이자없이 수수료만 수취하는 자산
-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이하 자산
- (4) 영 제53조제4항제3호의 초기투자자금
- (5) 미수수익

다. 금리변동계수는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뺀 금액이 양수인 경우 2.0%, 음수인 경우 1.5%를 적용한다.

3-2.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가.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나.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우선주는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로 한다.

다. 대출채권의 익스포져는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자산(수익증권, 비특정투자일임계약 자산 등)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금액을 금리부자산 익스포져로 한다.

- (1) 금리부자산 편입액
- (2) 운용 계약서상 명시된 비금리부자산의 최대편입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
- (3) (1)과 (2)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0)

3-3. (금리부자산 금리민감도)

가. 예치금

- (1)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바.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 (2) (1)외의 예치금은 금리민감도를 영(0)으로 한다. 단, 금전신탁은 다.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채권(신종유가증권 포함) 등 유가증권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산출한 유가증권별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일 기준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한다. 단, 두 개 이상의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이 산출되었을 경우 듀레이션을 산술평균하여 사용한다.
- (2) (1)에서 “듀레이션”이라 함은 시장금리가 1%p 변화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로서 수정 듀레이션 또는 유효 듀레이션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회사가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바.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다. 금리부자산이 편입된 자산(수익증권, 비특정투자일임계약 자산 등)

- (1) 편입된 금리부자산 각각에 대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고 편입자산 각각의 듀레이션을 채권평가기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듀레이션을 가중 평균하여 해당 자산의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 (2) 편입자산 각각의 듀레이션을 채권평가기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바.에 따라 산출한 개별 금리민감도를 가중평균하여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 (3) (1)내지(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금리민감도를 영(0)으로 한다.

라. 대출채권

- (1) 보험계약대출금(보험약관대출금)은 “3-5.보험부채 금리민감도”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적용한다.
- (2) 보험약관대출금 외의 대출채권은 바.에 따라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마. 가. 내지 라.에 불구하고 외화표시 예치금, 외화 유가증권 및 외화대출의 금리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감독규정 별표9 “4. 한도규제예외 파생금융거래” 가목의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는 채권평가기관이 헤지수단의 원화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 듀레이션을 금리민감도로 사용한다. 채권평가기관으로부터 듀레이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헤지된 기간중 잔존기간을 만기로 하여 바.에 의해 산출한 금리민감도를 사용한다.
- (2) 헤지거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리민감도를 영(0)으로 한다.
- (3) (2)에 불구하고 외화 표시보험으로 조달된 자금을 동일 통화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원화 금리부자산으로 보아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바. 가.(1), 나.(3), 라.(2) 및 마.(1)에서의 금리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표7>에서 정한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를 사용하거나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한 듀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한 듀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금리부자산별 잔존만기 산정은 <표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4. (보험부채 익스포져) 보험부채 익스포저는 <표9>의 보험상품 구분별로 감독규정 제7-69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5.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는 <표9>의 보험상품별 금리민감도를 보험부채 익스포저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제 4 장 신용위험액

4-1. (신용위험액 산출방법)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신용위험액은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 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내지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신용위험액은 대차대조표 자산(단기매매유가증권 제외),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4-2. (신용등급의 사용기준)

가. 보험회사는 신용위험액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

른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가 보유한 익스포저에 대하여 개별신용등급을 우선적용하고,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 (1)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장기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저가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는 해당 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
- (2)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저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일 때는 채무자 신용등급

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은 개별채무 등에 부여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이때 신용평가기관간의 신용등급 매핑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2장 제2절에 따른다.

- (1) 기업어음 등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익스포저에 부여된 신용등급(이하 “단기신용등급”이라 한다)

외국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S&P기준)	A-2	A-3	A-3 미만
국내 신용평가기관 전환등급	A1	A2~A3	A3 미만

- (2) 단기신용등급 이외의 신용등급(이하 “장기신용등급”이라 한다)

외국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S&P기준)	AAA~AA-	A+~A-	BBB+~BB-	BB-미만
국내 신용평가기관 전환등급	AAA	AA+~AA-	A+~BBB-	BBB-미만

라. 다.에 불구하고 재보험거래(“4-11. 재보험거래” 및 재보험미수금)에 대해서는 재보험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당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없다.

- (1) 익스포저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원금 또는 이자만 신용평가를 한 경우
- (2) 신용등급이 담보, 보증 등의 신용위험경감 방법을 반영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유 익스포저에 반영된 신용위험경감 방법이 이와 다른 경우

- (3) 신용평가기관이 평가대상회사 또는 투자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고 부여한 무의뢰 신용등급. 다만, 정부에 부여된 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

바. 유효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사. “4-3. 대차대조표 자산 익스포져” 내지 “4-16. 보증”에서의 신용등급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4-3. (대차대조표 자산 익스포져) 대차대조표상 자산항목의 익스포져는 <표10> 및 <표13>의 계정과목에 대한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및 이연대출부대수익 차감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액을 산출하며 그 외의 대출채권은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및 이연대출부대수익 차감전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액을 산출한다.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가. 예치금, 채권 및 대출채권의 위험계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용등급	AAA	AA+~AA-	A+~BBB-	BBB-미만	무등급
위험계수	0.8%	2%	4%	6%	4%

- (2) 단기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위험계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A-1등급의 위험계수는 0.8%로 한다.

신용등급	A1	A2 및 A3	A3 미만
위험계수	2%	4%	6%

- (3) 보험회사는 (2)에 따라 6%의 위험계수가 적용되는 익스포져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하여 무등급 익스포져를 갖는 경우, 해당 무등급(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을 모두 포함한다)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6%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대출채권 중 개별채무자에 대한 익스포져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3%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불구하고 “4-14. 신용위험경감”에 따라 신용위험경감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계수를 적용 할 수 있다.

라. 가. 내지 다.에 불구하고 보험약관대출의 위험계수는 0%로 한다.

4-5.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자산 위험계수) “4-3. 대차대조표 자산 익스포져” 및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에 불구하고 신용파생금융거래와 채권, 예금 등이 결합된 신종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신용파생금융거래와 채권, 예금 등의 자산을 분리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출한 후 합산한다.

가. 채권, 예금 등 자산 신용위험액은 대차대조표금액에 4-5.가.에서 정하는 거래상 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신용위험액은 거래계약금액에 신용보장 대상자산(이하 “준거 자산”이라 한다)의 4-4.가.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다수의 준거자산을 보유하고 N차부도종결조건인 경우에는 준거자산의 개별 익스포져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합산(100% 한도)한 값을 위험계수로 하되, 신용위험 감소효과가 가장 작은 (N-1)개의 익스포져는 제외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N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금융거래에 대해 n차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N-n)차부도종결조건의 신용파생금융거래로 보아 신용파생금융거래의 신용위험액을 산출한다.

4-6. (주식 위험계수) 주식의 위험계수는 12%로 한다. 다만, 가.의 유동성기준 및 나.의 분산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은 위험계수를 8%로 한다.

가. <표12>에서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유동성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개별종목의 보유금액이 전체 주식 보유금액의 10%이내
- (2) 개별종목의 보유금액이 유동성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합산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종목들을 합산한 금액이 유동성기준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50% 이내

4-7. (수익증권 위험계수)

- 가.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서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나.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1)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익스포저의 기초가 되는 각각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2) 기초자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가능자산의 위험계수중 가장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거나, 약관 또는 정관상 편입한도 비율에 따라 해당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위험계수가 높은 자산의 편입한도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 (3) (1) 및 (2)에 의해서 기초자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위험계수 12%를 적용한다.
 - (4) (2)에 불구하고 감독규정 제5-14조에서 정하는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고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5) (1) 내지 (4)에서 기초자산이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실물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12%의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4-8. (특수금융 위험계수)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내지 “4-7. 수익증권 위험계수”에 불구하고 특수금융의 위험계수는 <표11>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금융과 부동산프로젝트금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사회기반시설금융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부가 현금흐름을 전액 보증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0%로 한다.

대출채권						주식· 수익증권
신용등급	AAA	AA+~AA-	A+ ~ BBB-	BBB- 미만	무등급	
위험계수	0.4%	1%	2%	3%	2%	6%

나. 부동산프로젝트금융(PF)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출채권 중 선순위에 해당하는 대출의 위험계수는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 의한다.

신용등급	대출채권					주식·수익증권
	AAA	AA+~AA-	A+ ~ BBB-	BBB- 미만	무등급	
위험계수	1.6%	4%	8%	12%	8%	12%

4-9.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 위험계수) “4-3. 대차대조표 자산 익스포져” 중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내지 “4-8. 특수금융 위험계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표13>에서 정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표13>에 열거되지 않은 익스포져의 위험계수는 8%를 적용한다.

4-10. (장외파생금융거래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 선도, 스왑, 옵션 등의 장외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져는 대체비용과 잠재적익스포져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위험계수는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가.를 따른다.

$$\text{파생금융거래 신용위험액} = (\text{대체비용} + \text{잠재적익스포져}) \times \text{거래상대방별 위험계수}$$

가. 대체비용은 파생금융거래를 시가평가 함으로써 산출된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말한다.

나. 잠재적익스포져는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에 다음의 표에서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잔존만기	금리	외환(금)	주식	기타 상품
1년 이하	0%	1.0%	6.0%	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	5.0%	8.0%	12.0%
5년 초과	1.5%	7.5%	10.0%	15.0%

4-11. (재보험거래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 재보험거래 익스포져는 출재미경과보험료적립금과 출재지급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위험계수는 재보험자의 신용등급별로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 따른다.

4-12.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

가. “4-3. 대차대조표 자산 익스포져” 내지 “4-11. 재보험거래 익스포져 및 위험계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계수는 나. 내지 라.를 따른다.

나.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를 0%로 한다.

- (1)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2)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
 - (나)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다)
- (3)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및 유럽공동체(EC) 등
-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ADB), 유럽투자은행(EIB), 유럽투자기금(EIF), 북유럽투자은행(NIB), 카리브개발은행(CDB), 이슬람개발은행(IDB), 유럽개발은행협회(CEDB) 등
- (5)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AA-이상인 국가의 중앙정부(중앙은행 포함)

다.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나.(2)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져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적용기관
- (2)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 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라.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나. 또는 다.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익스포저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에 대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와 2% 중 높은 것으로 한다.

- (1)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아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

4-13. (연체자산의 위험계수)

가.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내지 “4-12.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에 불구하고 90일 이상 연체된 익스포저의 위험계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90일 대신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 익스포저”는 “4-14. 신용위험경감” 나.의 익스포저를 말한다.

대손충당금 차감전 익스포저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의 비율	위험계수		
	주택담보 및 사회기반시설금융	부동산프로젝트금융	기타
20% 미만	4%	12%	6%
20% 이상	2%	8%	4%

나. 가에 불구하고 “4-4.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 라.는 연체자산의 위험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4-14. (신용위험경감)

가. “4-15. 적격금융담보자산”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위험계수 대신 담보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이때, 적격금융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가.에서 정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나. 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저의 위험계수는 1.4%로 한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저는 주택의 담보가치(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액 또는 거래사례 등을 감안한 자체 감정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60%)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 다. 나.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익스포저의 위험계수는 거래상대방에 적용되는 위험계수와 무등급에 해당하는 위험계수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전액 담보된 익스포저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담보인정비율 5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차감한 범위내의 금액을 말한다.
- 라. 가. 및 다.에 불구하고 “4-4. 예치금,채권,대출채권 위험계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계수 3%를 적용한다.
- 마.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4-16. 보증”의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저에 대하여 보증인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상계계약하에 있는 경우 금전채무를 상계한 후의 잔액을 익스포저로 할 수 있다.
- (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재판관할내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지급불능 등 신용사건 발생과 관계없이 상계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것
 - (2)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계약하에 있는 자산과 채무를 언제라도 확정할 수 있을 것
 - (3) 익스포저를 상계후 순액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 사. 신용평가기관이 익스포저에 부여하는 신용등급에 신용위험경감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저의 위험계수 적용시 가. 내지 바.의 신용위험경감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아. 하나의 익스포저에 대하여 다수의 신용위험경감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위험경감방법별로 익스포저를 구분한 후 각 부분에 위험계수를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4-15. (적격금융담보자산)

- 가. “4-14. 신용위험경감” 가.의 적격금융담보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예·적금(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유사 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신용등급 BBB-이상), 투자등급 회사채 (장기신용등급 A-이상, 단기신용등급 A3이상), <표12>에 규정된 지수에 편입된 주식
 - (2) 시장에서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1)의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나. 적격금융담보자산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익스포저의 잔존만기(유예기간 포함)가 해당 담보자산의 잔존만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2) 해당 담보자산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재평가할 것

4-16. (보증)

가. “4-14. 신용위험경감” 마.의 보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 (2) 보증인의 보장범위와 대상 채권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 (4) 보증채무 이행사유 발생시 보험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적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지급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해당금액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나. 보증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1) 거래상대방보다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받는 중앙정부(BIS, IMF, ECB, EC 등을 포함한다), “4-12.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위험계수”의 공공기관, 은행, 증권회사
- (2) 신용등급 A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제 5 장 시장위험액

5-1. (시장위험액 산출방법)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시장위험액은 일반시장위험액과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일반시장위험액은 보험회사의 일반계정 및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내지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나.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변액보험계약 중 일정 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제지급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5-2. (일반시장위험액)

가. 일반시장위험액은 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외환포지션 및 상품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일반시장위험액 측정대상은 다음으로 한다.

- (1) 단기매매유가증권
- (2)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
- (3) 감독규정 제6-1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 (4) 시장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금융거래

다. 나.(1)의 단기매매유가증권에 포함된 수익증권 시장위험액 산출을 위한 포지션 구분 및 위험계수 적용은 “4-7. 수익증권” 나.(1)내지(4)에 따른다.

라. 나.(4)에서 헤지할 목적으로 보유한 파생금융거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은 감독규정 별표9 “4. 한도규제외 파생금융거래” 가목을 따른다.

5-3. (주식포지션)

가. 주식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단기매매증권 중 주식,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 및 이에 준하는 증권(전액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연계채권의 원금 미보장 부분 포함)
-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 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 (3)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주식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거래별로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5-2. 일반시장위험액” 나.(4)의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주식포지션 시장위험액에서 차감한다.

다.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는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전환한 익스포저에 대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한다. 다만, 주식옵션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 (2)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가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의 경우 수취부분은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라. 주식포지션의 위험계수는 16%로 한다. 다만 “4-6. 주식”의 유동성기준 및 분산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2%로 한다.

5-4. (금리포지션)

가. 금리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단기매매증권 중 채권, 기업어음(CP),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다만, “5-3. 주식포지션”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외한다.

(2) 금리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금리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거래별 익스포저에 금리민감도와 금리변동계수 0.9%를 곱하여 구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5-2. 일반시장위험액” 나.(4)의 헤지목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금리포지션 시장위험액에서 차감한다.

다. 나.의 금리민감도는 “3-3. 금리부자산 금리민감도”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3-3.다.(3)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민감도를 수익증권 등의 잔존만기로 하며, 외화 금리포지션의 경우 3-3.마.를 적용하지 않고 원화 금리포지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금리민감도를 산출한다.

라. 금리 관련 파생금융거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전환한 익스포저에 대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한다. 다만, 금리옵션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1) 선물, 선도계약은 국채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2) 스왑은 두개의 국채포지션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수취부분은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3) 국채포지션은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평가한다.

(4) (3)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5. (외환포지션)

가. 외환포지션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
- (2) 외국통화로 결제·산정되는 선물·선도·스왑거래의 포지션
- (3) 기타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나. 외환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익스포저에 위험계수 8%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중 외환옵션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통화별 순포지션을 기준일 현재 관련시장의 증가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절대값을 합산한다. 이 때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5-2. 일반시장위험액” 나.(4)의 헤지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거래의 익스포저를 외환 익스포저에서 차감하고, 이외의 거래는 합산하여 순 포지션을 산출한다.
- (2)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저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한다.
- (3) (2)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6. (상품포지션)

가. 상품포지션의 시장위험액은 상품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파생금융거래중 상품옵션관련 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5-7. 옵션의 시장위험액”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상품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 상계후 잔여 순포지션에 위험계수 15%를 곱하여 구한 금액
- (2) 상품별 매입 및 매도포지션을 합산한 총 포지션에 위험계수 3%를 곱하여 구한 금액

나. 가.에서 시장위험액 산출시 상품간의 대응관계가 밀접하고 최소 1년 이상 동안 가격의 상관계수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본다.

다. 상품위험액 산출대상 포지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에 속하는 상품 관련 금융상품의 매입·매도포지션

(2) 기초자산이 (1)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금융거래

라. 상품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익스포저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전환한 금액으로 한다.

- (1) 상품관련 파생금융거래는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한다.
- (2) 동일 상품의 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고정가격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을 수취하는 스왑거래는 매수포지션,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포지션으로 간주한다.
- (3) 서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교환하는 상품스왑의 경우 일반상품별로 분류한 후 여러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매수 및 매도포지션으로 분류한다.

5-7. (옵션의 시장위험액)

가. 옵션의 시장위험액은 거래별로 옵션 매수의 경우 델타위험액, 옵션 매도의 경우 델타위험액과 감마위험액을 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 (1) 델타위험액은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에 옵션의 델타를 곱하여 구한 델타환산포지션을 대상으로 기초자산 종류별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델타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할 때 옵션가격의 증감액을 말한다.
- (2) 감마위험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text{감마위험액} = | 1/2 \times \text{감마} \times (\text{상정변동폭})^2 |$$

- (3) (2)의 경우 감마는 기초자산가격이 1단위 변화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상정변동폭은 당해 옵션의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가) 기초자산이 주식, 주가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12%, 외환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8%, 상품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1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나) 기초자산이 금리 및 채권인 경우 기초자산 1단위당 시장가격에 듀레이션과 금리변동계수 0.9%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옵션의 시장위험액 산출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델타, 감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값을 이용할 수 있다.

- (1) 신용평가기관, 집합투자기구평가기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회사에 한한다) 및 채권평가기관 등이 제공하는 델타, 감마
-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체 모형에 의해 산출한 델타, 감마

5-8.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

- 가. 변액연금보험 보증위험액은 계약자적립금에 위험계수 2%를 곱한 금액에서 보증준비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나. 가.의 계약자적립금은 감독규정 제6-21조제3항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한다.
- 다. 가.의 보증준비금은 약정한 금액이상의 지급금 보증을 위하여 감독규정 제7-67조제2항의 최저적립금보증비용을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제 6 장 운영위험액

6-1. (운영위험액 산출방법)

- 가. “1-2.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의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나. 운영위험액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 이전 1년간 수입보험료(재보험계약으로 받은 보험료 포함)에 위험계수 1%를 곱하여 산출한다.

〈표1〉 보험상품 구분 기준

보험상품 구분	구 분 기 준
1.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1) 보장성사망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중 피보험자의 사망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2) 보장성상해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중 일반사망급부가 책임준비금 또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재해사고로 인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3) 질병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중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요양 등의 위험보장 또는 활동불능,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4) 기타생명보험	(1)내지 (3)에서 정한 보험종목 이외의 생명보험을 말하며, 아래 ①내지 ③의 보험종목을 포함
① 저축성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
② 교육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4항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 중 감독규정 제7-71조(별표 16)1.의 가입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
③ 연금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연금보험”
2. 장기손해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11호의 장기손해보험
(1) 질병보험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요양 등의 위험보장 또는 활동불능,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2) 운전자보험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 배상책임, 비용손해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3) 재물보험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화재, 파손, 도난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4) 기타장기손해보험	(1)내지 (3)에서 정한 보험종목 이외의 장기손해보험을 말하며, 아래 ①내지 ③의 보험종목을 포함
① 상해보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② 저축성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보험”
③ 연금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연금보험”
3. 일반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10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제2-1조(별지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및 보증보험 이외의 보험상품
(1) 화재, 도난보험	감독규정 제2-1조(별지 제1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제6항(부표2)에서 정한 화재보험 또는 도난보험
(2) 기술, 종합보험	감독규정 제2-1조(별지 제1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제6항(부표2)에서 정한 기술보험 또는 종합보험
(3) 해상보험	감독규정 제2-1조(별지 제1호)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9조제6항(부표2)에서 정한 해상보험
(4) 기타일반보험	(1)내지 (3)에서 정한 보험종목 이외의 일반보험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보험상품 구분	구 분 기 준
4. 자동차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10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제2-1조(별지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1) 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담보)	개인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중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를 의미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을 포함
(2) 비개인용자동차보험 (대인담보)	(1)에서 정한 개인용 이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중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를 의미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책임보험을 포함
(3) 기타자동차보험	(1)내지 (2)에서 정한 보험종목 이외의 자동차보험
5. 보증보험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10호의 “일반손해보험” 중 동 규정 제2-1조(별지 제1호)에서 정한 보증보험
6. 재보험	재보험전업사의 수재보험계약은 출재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되,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세부구분
(1) 비례재보험	재보험 인수비율에 따라 출재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보험료를 배분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그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인수비율에 따라 양자의 부담액을 산출하는 방식의 재보험
① 연동수수료적용	<p>계약의 모집에 소요된 출재보험회사의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재보험사가 출재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재보험수수료’라 한다)를 해당계약의 출재보험회사 손해를실적에 연동하여 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재보험회사의 손해액 증감이 재보험회사의 실제 지급금 증감으로 반영되어야 함 ㉡ 수수료율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각각에 해당하는 손해율 차이의 50% 이상이어야 함 ㉢ 수수료율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 최소수수료율은 기대수수료율의 92.5% 이하이어야 함. 단, 기대수수료율은 계약당시 잠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이하 ‘잠정수수료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재보험계약의 이전 5개년도 연평균 수재손해율 실적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사용 ㉤ 재보험사의 지급금은 수수료의 형태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함
② 연동수수료비적용	①이외의 비례재보험
(2) 비비례재보험	출재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일정수준까지 전액 부담하고 그 초과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등 양자간의 보험금 부담비율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 방식의 재보험

〈표2〉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단위 : %)

구 분	보험상품 구분	보험가격 위험계수 ㉠	갱신조정률(갱신형특약)	
			갱신주기 3년이하 ㉡	갱신주기 3년초과~5년이하 ㉢
생명 보험	보장성사망보험	14.8	56.0	71.0
	보장성상해보험	38.6	44.0	59.0
	질병보험	50.9	50.0	68.0
	기타생명보험	40.2	68.0	86.0
장기손해 보험	질병보험	38.2	47.0	66.0
	운전자보험	22.6	43.0	65.0
	재물보험	28.1	61.0	73.0
	기타장기손해보험	27.5	54.0	68.0

〈표3〉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단위 : %)

구 분	보험상품 구분	보험가격 위험계수	기준 합산비율	위험계수 상한	위험계수 하한
일반 보험	화재, 도난보험	36.8	107.0	47.8	25.8
	기술, 종합보험	2.0	65.5	2.6	1.4
	해상보험	5.1	85.8	6.6	3.6
	기타일반보험	1.2	77.7	1.6	1.2
자동차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17.9	112.5	23.3	12.5
	비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13.1	107.0	17.0	9.2
	기타자동차보험	16.3	108.2	21.2	11.4
보증보험	보증보험	38.9	-	-	-

〈표4〉 재보험 보험가격위험계수

(단위 : %)

구 분	보험상품 구분	보험가격 위험계수		
		비례재보험		비비례 재보험
		연동수수료적용	연동수수료비적용	
생명 보험	보장성사망보험	8.3		12.5
	보장성상해보험	17.0		25.5
	질병보험	25.5		38.3
	기타생명보험	27.3		41.0
장기손해 보험	질병보험	18.0		27.0
	운전자보험	9.7		14.6
	재물보험	17.1		25.7
	기타장기손해보험	14.9		22.4
일반보험	화재, 도난보험	31.3	36.8	55.2
	기술, 종합보험	1.7	2.0	3.0
	해상보험	4.3	5.1	7.7
	기타일반보험	1.2	1.2	1.8
자동차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15.2	17.9	26.9
	비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11.1	13.1	19.7
	기타자동차보험	13.9	16.3	24.5
보증보험	보증보험	33.1	38.9	58.4

〈표5〉 일반손해보험 준비금위험계수

(단위 : %)

구 분	보험상품 구분	준비금위험계수
일반 보험	화재, 도난보험	1.2
	기술, 종합보험	34.3
	해상보험	43.7
	기타일반보험	77.9
자동차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29.6
	비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35.4
	기타자동차보험	14.5
보증보험	보증보험	1.2

〈표6〉 재보험 준비금위험계수

(단위 : %)

구 분	보험상품 구분	준비금위험계수		
		비례재보험		비비례 재보험
		연동수수료적용	연동수수료비적용	
일반 보험	화재, 도난보험	1.2	1.2	1.2
	기술, 종합보험	29.2	34.3	34.3
	해상보험	37.1	43.7	43.7
	기타일반보험	66.2	77.9	77.9
자동차 보험	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25.2	29.6	29.6
	비개인용자동차보험(대인담보)	30.1	35.4	35.4
	기타자동차보험	12.3	14.5	14.5
보증보험	보증보험	1.2	1.2	1.2

〈표7〉 잔존만기별 금리민감도

잔존만기 구간	금리민감도
3개월 미만	0.1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0.36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0.71
1년 이상~2년 미만	1.38
2년 이상~3년 미만	2.25
3년 이상~4년 미만	3.07
4년 이상~5년 미만	3.85
5년 이상~7년 미만	5.08
7년 이상~10년 미만	6.63
10년 이상~15년 미만	8.92
15년 이상~20년 미만	11.21
20년 이상~25년 미만	13.01
25년 이상~30년 미만	14.42
30년 이상	15.53

〈표8〉 금리부자산별 잔존만기 산정기준

구 분		잔존만기
변동 금리부 자산	시장금리에 연동된 경우	차기 금리개정기일까지의 잔존기간
	적용금리를 보험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대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고정 금리부 자산	만기전에 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대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또는 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날까지의 잔존기간
	분할상환조건 대출	대출금액을 분할상환 예정일별로 안분하여 해당 잔존만기 적용
	만기 또는 차기 금리개정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금리부자산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듀레이션을 축소시키는 옵션(전환권, 조기상환권, 플로어 등)이 내재된 유가증권	원화 유가증권
외화 유가증권		환위험이 헤지된 기간중 잔존기간과 차기 옵션행사일까지의 잔존기간중 짧은 기간

〈표9〉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보험상품 구분		금리 민감도		
		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1. 생명 보험	(1) 보장성사망보험	10.6	5.9	
	(2) 보장성상해보험	10.6	5.9	
	(3) 질병보험	10.6	5.9	
	(4) 기타 생명 보험	① 저축성보험	4.4	0.4
		② 교육보험	4.4	0.4
③ 연금보험		9.2	0.6	
2. 장기 손해 보험	(1) 질병보험	7.4	6.9	
	(2) 운전자보험	3.8	0.5	
	(3) 재물보험	3.8	0.5	
	(4) 기타 장기 손해보험	① 상해보험	7.4	6.9
		② 저축성보험	8.7	0.5
③ 연금보험		9.5	1.8	

주 : 1) 보험상품 구분은 <표1>에 따른다.
 2) 금리연동형보험은 감독규정 제7-49조제1항제6호의 금리연동형보험(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을 말한다.
 3) 금리확정형보험은 금리연동형보험 이외의 보험을 말한다.
 4) 주2)에도 불구하고 금리확정형보험이 일정기간 경과후 금리연동형보험으로 변경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일의 저축보험료 부리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표10〉 신용위험액 측정대상별 계정과목

구 분	관련 계정과목
예치금	예금, 금전신탁,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선물거래예치금, 기타예치금
채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채권, 신종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에 포함된 채권 등 다만,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주식은 포함하고, 주식으로의 의무전환 조항이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은 제외
주식	매도가능증권의 주식, 출자금,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외화주식, 기타유가증권(외화기타유가증권 포함)에 포함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해외 투자회사의 주식. 다만,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으로의 의무전환 조항이 있는 유가증권(발행인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은 포함
수익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수익증권, 외화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및 외화기타유가증권 중 투자일임형 계약자산 등
부동산	토지, 건물, 구축물, 해외부동산, 건설중인 자산
대출채권	콜론, 보험약관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어음할인대출, 지급보증대출, 기타대출

〈표11〉 특수금융의 분류

구 분	분류기준
사회기반시설금융 (SOCF)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발전소, 교통시설 등 큰 비용을 수반하는 대형 설비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으로, 동 프로젝트에 의해 담보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
부동산프로젝트 금융(PF)	나대지, 공동주택 또는 비농지·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의해 담보되며 리스료, 임대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일체의 건축 또는 보유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으로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매각대금, 집단성 개별대출을 일차적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

〈표12〉 주요국 거래소의 지수명

국명	지수	국명	지수
한국	KOSPI200	유럽	Dow Jones Stoxx 50 Index FTSE Eurotop 300, MSCI Euro Index
호주	All Ordinaries	영국	FTSE 100, FTSE mid 250
오스트리아	ATX	홍콩	Hang Seng 33
벨기에	BEL 20	네델란드	AEX
캐나다	TSE 35	이탈리아	MIB30
프랑스	CAC 40	스페인	IBEX 35
독일	DAX	스웨덴	OMX
일본	Nikkei 225	스위스	SMI
싱가포르	Straits Times Index	미국	S&P 500

〈표13〉 기타 대차대조표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계수

계정과목	신용위험계수
현금	0
부동산	6%
보험미수금(재보험미수금)	거래상대방의 위험계수
보험미수금(재보험미수금이외), 미수수익, 본지점계정차	거래상대방의 위험계수 또는 4%
미수금, 보증금, 선급금, 가지급금, 가지급보험금, 구상채권, 받을어음, 부도어음	4%
공탁금, 선급법인세, 선급부가세	정부에 대한 위험계수
미상각신계약비, 이연법인세자산, 무형자산, 선급비용	신용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 (자본 차감항목)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기타의 유형자산, 신탁계정차	신용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
파생상품자산	장외파생금융거래에서 계산

5 업무보고서 양식

생명보험

1. [AH250]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2. [AH251]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3. [AH252] 보험위험액
4. [AH258] 금리위험액 익스포져 및 금리민감도
5. [AH259] 신용위험액(총괄)
6. [AH260] 신용위험액(유가증권)
7. [AH261] 신용위험액(대출채권)
8. [AH262] 신용위험액(기타)
9. [AH263] 시장위험액
10. [AH264] 시장위험액(외환)
11. [AH265] 운영위험액

손해보험

1. [AI250]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2. [AI251]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3. [AI252] 장기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
4. [AI253] (재보험전업사)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보험가격위험액
5. [AI254]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
6. [AI255] (재보험전업사) 일반손해보험 보험가격위험액
7. [AI256] 일반손해보험 준비금위험액
8. [AI257] (재보험전업사) 일반손해보험 준비금위험액
9. [AI258] 금리위험액 익스포져 및 금리민감도
10. [AI259] 신용위험액 (총괄)
11. [AI260] 신용위험액 (유가증권)
12. [AI261] 신용위험액 (대출채권)
13. [AI262] 신용위험액 (기타)
14. [AI263] 시장위험액
15. [AI264] 시장위험액 (외환)
16. [AI265] 운영위험액

